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7. 1.>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증



■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신자 :

년 월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피 보 험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로· 노무 제공 내용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연락처	현장명	근로· 노무제공 연월	근로· 노무제공 일수	임금(보수) 총액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5조의3제5항·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구직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 **작 인**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문 서 번 호			